송현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1.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직제) 시설의 직제는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시설의 규모와 이용정원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1.원장 2.사무국장 3.관리인 4.선임사회복지사 5.사회복지사 6.사무원 7.간호사 8.간호조무사
9.물리(작업)치료사 10.촉탁의사 11.영양사 12.조리원 13.위생원 14.요양보호사
(조직) 시설의 조직과 그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행정관리팀-시설 문서 및 직원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의료재활팀-의료재활팀 업무총괄
③ 생활지원팀-입소자 일상생활케어
④ 급양지원팀-입소자 급식, 영양 및 위생관리
⑤ 시설운영조직은 운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재편할 수 있다.
(인사) 직원은 그 국적, 성별, 종교,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직원은 제 9조(직제)와 같으며, 정규직, 비정규직(시간제, 촉탁직 등)으로 구분한다.
① 시설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소정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급여) ① 시설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②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급여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④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퇴직,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의 경우에는 일할계산 지급한다.
⑤ 급여는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 말일에 직원 명의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회계)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해서만 행하며, 일체의 재무회계행위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물품) 물품이란 시설이 소유하는 동산 또는 시설이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하며, 관리란 위 물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 즉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설치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시설의 입소정원은 시설설치신고 정원 63명이다.
② 입소정원 이외의 입소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관리한다.
③ 입소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 시설급여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이용자 모집은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소식지, 홍보 리플렛 활용과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유관기관,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입소자를 모집한다.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계약목적,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입소계약) 시설입소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① 시설입소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대상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시설입소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인정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등급변경, 등급 갱신, 계약자(보호자)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 시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개월 내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유무확인),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은 계약 전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제공이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시설과 계약자(보호자)쌍방의 서명날인 후 부본을 계약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⑤ 시설은 계약이 체결되면 시설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이용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한다.

(이용비용 부담) ①대상자의 입소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현 고시 금액에 의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은 월 30일 기준으로 일반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12%, 8% 경감하여 부담하고 계약시 반드시 명기하며, 별지1과 같다

②본인비급여부담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식재료비 및 상급침실료는 별지1에 의하며, 원장이 정한다.

③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입소자(보호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납부해야 한다.

④현 시설의 입소비용은 별지1과 같으며, 비용납부 방법은 현금납부, 계좌이체, 카드결제 중 택일하여 납부하며,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시설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①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하였을 때
② 계약자(보호자)가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납부연기신청 없이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 시설의 입소자 병원치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또는 계약자(보호자)가 치료비 등으로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④ 계약자(보호자)가 입소자의 서비스이용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정당한 의견제시 없이 간섭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⑤ 입소자 간의 상해, 분실, 도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⑥ 계약자(보호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⑦ 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⑧ 계약 종료와 함께 퇴소 시 잔여 이용료는 계약자(보호자)은행계좌 또는 입소자 은행계좌로 환불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비용부담이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보호자들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안내하여 비용부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비급여는 현 물가변동, 공공요금 등의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시설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 30일 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안내해 비용부담을 하도록 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은 수급자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욕구조사, 급여제공계획에 의해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 신체기능회복,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여가선용프로그램, 기타 필요에 의한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되, 제99조에 의한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수급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신체제재대상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수급자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상태가 긴급한 수급자

② 시설에서의 신체제재 종류에는 손목·발목·손장갑·조끼억제대를 사용한 제재가 있으며, 필요시 위험방지를 위한 끈과 벨트를 사용한 억제가 있고,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등으로 제재 할 수

있다. 단, 수급자에 대한 신체제재 시 쉽게 풀어지고 수급자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허용되도록 하거나 또는 잡아당겼을 때 미끄러지지 않으며 풀기 쉽도록해야 하고 조여지거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설에서는 수급자 신체제재 시 우선, 수급자의 문제행동형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신체 억제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여야 하고, 신체억제대를 사용해야 할 경우 사용이유, 사용부위, 종류 및 사용방법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처치받도록 한다. 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억제대 사용 설명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상세 내용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④ 수급자 신체 제재 후 시설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최초 4시간마다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소견 발생시 억제대 사용기록지에 시간, 장소, 상태를 기록하고 억제대 제거 또는 사용부위 감소 필요시 원장에게 보고하며, 원장은 억제대 제거처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전에 수급자의 상태를 재평가 한다.
⑤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⑥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특별침실이나 1인용 상급 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등에 관한 고시전문에 의한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입소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촉탁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④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하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⑥ 퇴소(사망) 및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 입소 중에 사망 시에 사후서비스로 조화 또는 조의금을 시설운영비로 전달할 수 있다.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물 사용상에 주의한다.

①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②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③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시설은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 : 약관에 정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 화재보험가입 : 약관에 정한 화재 시 시설물 및 집기에 대한 책임보험

-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 약관에 정한 차량이용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 전문인배상 책임보험가입 : 약관에 정한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0.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 운영규정은 시설의 운영 여건에 맞추어 알맞게 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 다음의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

① 운영규정의 개정(안)발의는 운영위원회, 시설종사자 또는 시설관계자에 의하여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원장이 운영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시설 대표자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신청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운영규정의 변경이 가능하다.

②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11.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운영위원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장, 종사자, 입소자 노인 대표, 입소자 가족 대표, 지역주민 및 관할 사회복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는 본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